

2026년도 MICE 우수기업(기관·단체) 및 유공 선발 공고(안)

「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부산의 마이스(MICE)산업 발전에 기여한 마이스(MICE) 우수기업(기관·단체)과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9월 29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선발 규모

- 우수기업(기관·단체) 3개사, 유공자(개인) 5명

2. 신청자격

- (우수기업·기관·단체) 부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, 표창 신청일 기준 창업 기간이 2년 이상 된 기업(기관·단체)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(기관·단체) ※ 협회, 단체 등 부산광역시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
 - 마이스 행사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(기관·단체) ※ 단순 참가 제외
 - 지역 특화 마이스 행사, 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(기관·단체)
 -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우수한 기업(기관·단체)
- (유 공 자) 마이스 관련 기업(기관·단체)에서 표창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재직 중이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재직 기업(기관·단체)의 추천을 받은 자
 - 부산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
 -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으로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자
 - 부산지역 특화 마이스 개발을 통하여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
 - 지역 마이스업계 상생과 발전에 기여한 자 등

3. 신청 및 추천 제한

가. 우수기업(기관·단체) 표창 신청 제한

- 1) 최근 3년 이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고발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(기관·단체) 또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
- 2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의거 체납 중인 기업(기관·단체)
- 3)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(기관·단체)
- 4)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
▶ 포상 추천 제한 세부 기준은 아래 유공자 포상 추천 제한 기준과 동일

나. 유공자 표창 신청(추천) 제한

- 1)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
 - 가) 수사 중이거나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 - 나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다)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마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바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사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아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- 자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
- 2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(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)
- 3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- 가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 - 나)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4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5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- 6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의거 체납 중인 자
- 7)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- 8) 1년 이내에 개인 표창을 받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
〈민간인 추천 제한자 조회 방법〉

구 분	조회방법
수사·형사 처벌	▶ 시장 포상은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(서식6) 로 같음
산업안전 보 건 법	▶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 → 뉴스·소식 → 공지사항 → 검색창 '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' 입력
공정거래 관 련 법	▶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법위반사실조회 → 회사명 입력
근로기준법	▶ 고용노동부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조회

4. 신청 서류

구 분	구비서류	비 고
① 기업· 기관·단체	· 사업자등록증, 인·허가 등록증 또는 관련 협회 회원증 사본 ·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· 마이스 행사 기여 증빙 자료 - 행사자료(브로슈어, 팸플릿 등), 홈페이지 화면 출력, 언론보도, 계약서 사본, 실적증명서 등 · 일자리 창출 실적 증빙 자료(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) · 기타 기업(기관·단체) 소개 자료 ▶ 팸플릿, 회사소개서 등	불임 서식 1, 3, 4, 6
② 개 인	· 재직증명서 ·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또는 미과세증명서) · 마이스 관련 자격증 사본 · 유공 분야 설명자료 등	불임 서식 2, 3, 5, 6

5. 신청 및 접수방법

- 신청기간: 2026. 9. 29.(화) ~ 10. 14.(수) 18:00 한
- 신청방법: 기업(기관·단체) 또는 개인이 직접 신청
-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 (wickham@korea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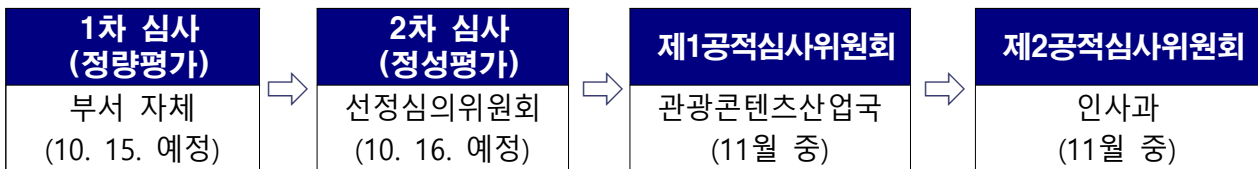
▣ 제출서류 번호 순으로 하나의 PDF 파일로 송부, 선정 후 원본 제출

▣ 2026. 10. 14.(수) 18:00 접수 마감

6. 수상기업·기관·단체(수상자) 특전

- 민간주관 전시회·국제회의 지원신청 시 가점
- 국내외 MICE 마케팅 및 전시회·로드쇼 참가 신청 시 가점

7. 표창대상자 선정 절차



8. 심사기준

가. 기업 · 기관 · 단체

구 분	평가항목	배 점	평 가 내 용				
합 계		100점					
정량평가	사 업 성 과	40점	○ 마이스 행사 참여·개최·유치·대행·지원 실적(30점) - 건당 3점(주최·주관행사는 건당 2점 가점) - 단순참가는 제외				
			○ 고용창출(10점) - 신청일 기준 직원 수 대비 '26년 신규직원 채용 비율				
			100~81%	80~61%	60~41%	40~21%	20~1%
			10점	8점	6점	4점	2점
			※ 비율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				
정성평가	지역공헌도	60점	○ 부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활동 사항				

나. 개인

구 분	평가항목	배 점	평 가 내 용
합	계	100점	
정량평가	사 업 성 과	20점	○ MICE 행사 참여·개최·유치·대행·지원 실적(20점) - 건당 3점(주최·주관행사는 건당 2점 가점) - 단순참가는 제외
정성평가	지역공헌도	80점	○ 부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활동 사항

9. 선정 결과 통보 : 개별 통보

10. 유의사항

- 신청서에 허위기재,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나 각종 증명(증빙)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표창을 취소함
- 신청자(기업·기관·단체 등) 자격 미달 시 당초 계획 규모보다 작게 선발할 수 있음
- 기타 문의: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산업과(☎ 051-888-5195)